

1. 의결주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0.28)됨에 따라 시장참여자·배출권 거래소 검사 등의 방법과 절차, 시장 안정화 조치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제4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25.11)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배출권 할당 시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고려(안 제3조제1항 등)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배출허용총량 설정 시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고려 사항을 반영

나.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사유 구체화(안 제10조제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 구체화

다. 배출권 추가 할당 사유 신설 및 기준 완화 등(안 제27조 등)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반영하여, 재난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될 경우 추가 할당 가능하도록 추가할당 사유 신설
- 배출효율 우수업체 등 배출권 잉여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할당대상업체가 추가 할당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라.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거절 사유(안 제32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의 배출권 거래 계정 등록 신청 거절 사유를 법 제22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사항 및 불법 자금세탁행위 등으로 구체화

마. 시장 참여자 예탁금 지급 방법과 절차 세부사항(안 제37조의7 등)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0항의 예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탁금 지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바. 시장 참여자 정보의 제공 및 관리(안 제37조의9)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1항에서 위임된 금융·신용 정보 제공 방법과 절차로서, 시장 참여자 정보의 제공 범위, 암호화 및 분리 등을 구체화

사.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 관리·감독, 검사(안 제37조의14 등)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3항에

서 주무관청의 검사권이 신설됨에 따라 감독, 검사 등의 방법 및 절차의 세부사항 마련

- 기후부장관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권, 금융감독원장 등 기관장과의 협조 사항을 규정

아.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안 제38조)

- 배출권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위임된 시장 안정화 조치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 경매 낙찰 가격이 배출권 예비분 공급 가격, 경매 보류 가격 범위를 이탈할 시,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및 유상할당 공급량의 조정을 통한 시장 안정화 조치 규정

자.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안 제57조)

- 검사 및 실태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또는 관장기관에 업무 위탁

차. 검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4)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검증기관에 대한 처분이 변경된 것을 별표 4에 반영

카. 검증심사원의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7)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검증심사원에 대한 처분이 변경된 것을
별표 7에 반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본법 제8조제1항”을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파목 중 “관리·감독”을 “관리·감독, 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제3호”를 “법 제8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및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란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양도 등의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미만으로 감소한 후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대

상업체 지정 기준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제18조제4항 중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를 “경매의 방법으로 공급한다”로 한다.

제24조 중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경매의 방법으로 공급된 이행연도”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배출권 할당량”을 각각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추가”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추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할당대상업체의”를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한 사업장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화석연료”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화석연료”로 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제28조제1항 중 “사유로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을 “사유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제1호 중 “증가된”을 “해당 사유로 증가된”으로,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로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증가된 배출량 이내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배출권 할당량”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할당량을”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배출권 할당량”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할당량을”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배출권 할당량”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할당량을”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를 “경매의 방법으로 공급한다”로 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로 한다.

제3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정 등록신청이 법 제22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사항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

2. 배출권 총수량과 할당대상업체 이외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보유수량 등을 고려할 때 거래 계정을 추가로 등록함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당해년도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7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치기한 및 예탁금의 지급 방법”을 “예치기한”으로 한다.

제37조의7부터 제37조의10까지를 각각 제37조의10부터 제37조의13까지로 하고, 제37조의7부터 제37조의9까지 및 제37조의14부터 제37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7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통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0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예탁금의 지급시기·지급장소, 그 밖에 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권금융회사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2항의 시한 내에 공고와 공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의8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증권금융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라 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부터 예탁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2. 제37조의7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금의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3.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금 원금 총액을 시장 참여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예탁한 예탁금 원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시장 참여자별 예탁금 원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다만,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원금 총액이 시장 참여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예탁한 예탁금 원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별 예탁금 원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 중 미지급예탁금이용료는 제1항제3호의 방법을 준용하여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예탁금 원금”은 “미지급예탁금이용료”으로 한다.

③ 증권금융회사는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예탁금이 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증권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예탁금의 지급업무 중 일부를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9 (시장 참여자 정보의 제공 및 관리) 법 제22조의3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 참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을 말한다), 계좌번호, 예탁금 금액, 예탁금 이용료, 과세에 관한 사항을 증권금융회사에 제공할 것
2. 시장 참여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시장 참여자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증권금융회사는 제공받은 시장 참여자 정보를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5. 증권금융회사의 정보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은 예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할 것
6. 증권금융회사는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제37조의14(검사 등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은 현장검사와 서면검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검사대상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대상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가 제출하는 자료를 통하여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의4제6항의 조사는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의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로 구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검사 및 조사(이하 “검사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15(검사 등 결과보고 및 조치) ①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를 담당한 자는 검사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 등의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업무방법의 개선 권고
2.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에 대한 지정 취소
3.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
4.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③ 검사 등 결과보고에 포함될 사항 및 조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16(금융감독원 등 협조 요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의 행위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동검사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이란 한국은행 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말한다.

제37조의11을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중 “비율”이란 3배”를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제4항에 따른 경매의 낙찰 가격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배출권 예비분 공급 가격 이상인 경우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경매의 낙찰 가격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경매 보류 가격 이하인 경우

제38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배출권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할당대상업체가”를 “할당대상업체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조치(이하 “시장 안정화 조치”라 한다)”를 “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법 제23조제2항제3호”를 “법 제23조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1.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최근 2년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이거나 100분의 70 이하로 형성될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이하 “시장 안정화 조치”라고 한다)를 할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르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57조제3항제3호의3 중 “법 제22조의4제1항”을 “법 제22조의4”로, “참

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를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검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 “인증, 법 제37조제7호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한다.

3의4. 법 제37조제1호·제3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제4호의

4·제5호·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제58조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란(종전의 라목) 마목(종전의 라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를 “법 제24조의2제5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4조의2	지정취소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	제5항제4호				
무를 수행한 경우					

별표 4 제2호라목2) 위반행위란 2) 중 “경우”를 “경우(별표 3 제10호 중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외)”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를 “법 제24조의2제5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4조의2제5항제5호”를 “법 제24조의2제5항제6호”로 한다.

별표 7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24조의3제4항제1호·제2호”를 “법 제24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종전의 다목) 라목(종전의 다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4조의3

제4항제3호”를 “법 제24조의3제4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u>다. 자격정지 처분을 위반하여</u>	<u>법 제24조의3</u>	<u>자격취소</u>			
<u>자격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u>	<u>제4항제3호</u>				
<u>무를 수행한 경우</u>					

별표 7 제2호다목3) 위반행위란 3)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4조의3제4항제3호”를 “법 제24조의3제4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근거 법조문란부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근거 법조문란까지 중 “법 제24조의3제4항제4호”를 각각 “법 제24조의3제4항제5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제5호,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을 이행연도로 하여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u>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u>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		<u>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u>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
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		-----.
1. 다음 각 목의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		-----

가. ~ 타. (생략)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법 제22조의4에 따른 <u>관리·감독, 자료제출·보고 명령 및 협조 요청</u>	파. ----- <u>관리·감독, 검사</u> -----
하. ~ 도. (생략)	하. ~ 도.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신설>	제10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u> ”란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양도 등의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₂ -eq) 미만으로 감소한 후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 기준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
1. 2. (생략)	-----
②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업체는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에 대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고,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①

④ 제3항-----

-----.

⑤ ----- 제3항-----

-----.

⑥ ----- 제5항-----

-----.

제17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량을 결정한다. 1. (생략) 2. <u>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u> 3. ~ 6. (생략) ② (생략)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u>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u> ⑤ (생략) 제24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22조제1항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중 무상	----- ----- ----- ----- -----. 1. (현행과 같음) 2. <u>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u>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경매의 방법</u>으로 공급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 ----- ----- ----- -----
--	---

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제정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제정에 등록한다.

제27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에서 같다)이 10

----- 경매의 방법으로
공급된 이행연도-----

-----.

제27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① -----

-----.

1. -----

----- 예상 온
실가스 배출량 -----

0분의 100 이상인 경우

2. 사업장 내 시설의 가동실적
증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
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인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
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추가
로 항공기를 운항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
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4. (생략)

<신설>

2. -----

-----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3. -----

----- 보유
한 사업장에서 추가-----

4. (현행과 같음)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
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함에 따른 <u>할당대상업체의</u>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가.·나. (생략) 6. 할당대상업체가 <u>화석연료</u>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제28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u>사유로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u> 할당대상업체는 매	<u>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u> 6. ----- -- <u>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한 사업장에서</u> ----- ----- 가.·나. (현행과 같음) 7. ----- -- <u>보유한 사업장에서 화석연료</u> --- 제28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① ----- ----- ----- <u>사유에 해당하</u> <u>는</u> ----- ----- -----
--	--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위해 보유하는 배출권 예비분의 잔여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이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후단 신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

-----.

② -----

-----.

1. -----

----- 해
당 사유로 증가된 ----- 국가
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
이 경우 해당 사유로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 사업장
의 증가된 배출량 이내로 한
다.

2. -----

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 100분의 125 미만인 경우: 그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50

나.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25 이상 100분의 150 미만인 경우: 그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75

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50 이상인 경우: 그 할당량

-----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가. -----

-----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

나. -----

-----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

다. -----

-----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 예상 온

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100 ③ ~ ⑥ (생략) ⑦ 유상으로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u>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u> ⑧ (생략) 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 ③ (생략)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할·양도·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u>중장기감축 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u>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1. ~ 3. (생략) ⑤ ~ ⑭ (생략) 제32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u>실가스 배출량을</u> -----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 <u>경매의 방법으로 공급한다.</u>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u>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u>----- ----- ----- ----- -----.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⑭ (현행과 같음) 제32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	---

등) ① ~ ⑦ (생략)

<신설>

⑧ (생략)

제37조의6(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① (생략)

②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예
치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정 등록신청이 법 제22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사항 또
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
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목적
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

2. 배출권 총수량과 할당대상업
체 이외 시장 참여자의 배출
권 보유수량 등을 고려할 때
거래 계정을 추가로 등록함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당해년
도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
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
우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37조의6(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① (현행과 같음)

<삭제>

그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
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서는 안 된다.

③ 증권금융회사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시장 참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시장 참여자에게 우선하여 지급
해야 한다.

1.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해산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4
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
항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
(이하 “투자중개업”이라 한다)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의 양도가 승인된 경
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6
호에 따라 투자중개업 전부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

<삭 제>

다)의 폐지가 승인된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제3항제1
호에 따라 투자중개업 전부
정지 명령을 받아 그 정지 기
간 중에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
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그 밖에 예탁금의 산정, 예치
기한 및 예탁금의 지급 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신 설>

④ ----- 예치
기한 -----

-----.

제37조의7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통지) ①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0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
을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
실과 예탁금의 지급시기·지급

<신 설>

장소, 그 밖에 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권금융회사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2항의 시한 내에 공고와 공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기 후에 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의8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증권금융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라 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부터 예탁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2. 제37조의7제1항에 따라 기 후에 에너지환경부장관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금

의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3.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금 원금 총액을 시장 참여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예탁한 예탁금 원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시장 참여자별 예탁금 원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다만,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원금 총액이 시장 참여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예탁한 예탁금 원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별 예탁금 원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 중 미지급예탁금이용료는 제1항제3호의 방법을 준용하여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예탁금 원금”은 “미지급예탁금이용료”으로 한다.

③ 증권금융회사는 법 제22조의 3제10항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예탁금이 있는 경우 그 처리방

<신 설>

법 등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증권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예탁금의 지급업무 중 일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
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9 (시장 참여자 정보의
제공 및 관리) 법 제22조의3제1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
참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
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
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4
호에 따른 식별수단을 말한
다), 계좌번호, 예탁금 금액,
예탁금 이용료, 과세에 관한
사항을 증권금융회사에 제공
할 것

2. 시장 참여자 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u>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 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u> <u>3. 시장 참여자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u> <u>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u> <u>필요한 조치를 할 것</u> <u>4. 증권금융회사는 제공받은 시장 참여자 정보를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u> <u>5. 증권금융회사의 정보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은 예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할 것</u> <u>6. 증권금융회사는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u>
<u>제37조의7 ~ 제37조의10 (생략)</u>	<u>제37조의10 ~ 제37조의13 (현행 제37조의7부터 제37조의10까지와 같음)</u>

제37조의11(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에 따른 검사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제37조의14(검사 등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은 현장검사와 서면검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검사대상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대상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

<신 설>

가 제출하는 자료를 통하여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의4제6항의 조사는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의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로 구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검사 및 조사(이하 “검사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15(검사 등 결과보고 및 조치) ①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를 담당한 자는 검사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 등의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1. 업무방법의 개선 권고
 2.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에 대한 지정 취소
 3.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
 4.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 기
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 ③ 검사 등 결과보고에 포함될
사항 및 조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16(금융감독원 등 협조
요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
의 행위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
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게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검사
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
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

제38조(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배를 말한다.

<신 설>

라 공동검사를 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결과서를 송부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동검사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이란 한국은행 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말한다.

제38조(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① -----
-----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8조제4항에 따른 경매의 낙찰 가격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신 설>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의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최근 2년간 배출권 평균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가 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은

장관이 공고하는 배출권 예비분 공급 가격 이상인 경우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경매의 낙찰 가격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경매 보류 가격 이하인 경우

② -----
--배출권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

-----.

③ -----

-----.

1.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최근 2년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이거나 100분의 70 이하로 형성될 경우

2. 할당대상업체 등이 -----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
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
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
여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신 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외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
(이하 “시장 안정화 조치”라 한
다)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
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당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배출권의 최소 또
는 최대 보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안정화 목적이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
정화 조치(이하 “시장 안정화
조치”라고 한다)를 할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의 방법에 따르고,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르
지 아니한다.

⑤ -----

----- 조치 -----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최소 또는 최대 보유량의 설정을 철회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출권의 최소 및 최대 보유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다만, 직전 6개월간 배출권 평균 보유량이 2만5천 배출권 미만인 거래 참여자(할당 대상업체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최대 보유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2. (생략)

⑥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의 설정을 말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 기준, 시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⑥ 제5항-----

-----.

-----.

1. 2. (현행과 같음)

⑦ 법 제23조제2항제4호-----

-----.

⑧ · 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⑩ ----- 제9항-----

-----.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위탁) ① · ② (생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 3의2. (생략)

3의3.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점검 및 확인

<신설>

4. ~ 6. (생략)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 8. (생략)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법 제22조의4-----
-----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
소에 대한 검사, -----
--

3의4. 법 제37조제1호 · 제3호 · 제4호 · 제4호의2 · 제4호의3 · 제4호의4 · 제5호 · 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4. ~ 6. (현행과 같음)

④ -----

인증, 법 제37조제7호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

1. ~ 8. (현행과 같음)

제5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 증권금융
회사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37조의6제3항에 따른 예탁금
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

<삭 제>

현행 시행령 별표	시행령 별표 개정안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u>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0조제6항 관련)</u>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을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u>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0조제6항 관련)</u>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을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의2 제5항제1호	지정 취소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의2 제5항제1호	지정 취소			
나. 검증기관이 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법 제24조의2 제5항제2호	지정 취소				나. 검증기관이 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법 제24조의2 제5항제2호	지정 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 제24조의2 제5항제3호	지정 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 제24조의2 제5항제3호	지정 취소			
< 신 설 >						라.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4조의2 제5항제4호	지정 취소			
라.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별표 3 제1호부	법 제24조의2 제5항제4호	지정				마.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의2 제5항제5호				

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 무기준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 2) 별표 3 제5호부 터 제11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 수하지 않은 <u>경 우</u> 3) 별표 3 제12호 에 따른 업무기 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취소				
		업무 정지 1 개월	업무 정지 3 개월	지정 취소		
		시정 명령	업무 정지 1 개월	업무 정지 3 개월	지정 취소	
<u>마.</u> 다른 법률을 위 반한 경우	<u>법 제24조의2 제5항제4호</u>	업무 정지 3 개월	지정 취소			
<u>바.</u> 법 제24조의2제1	<u>법 제24조의2</u>	지정				

1) 별표 3 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 무기준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 2) 별표 3 제5호부 터 제11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 수하지 않은 <u>경 우(별표 3 제10 호 중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 우 제외)</u> 3) 별표 3 제12호 에 따른 업무기 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정 취소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 개월	지정 취소		
		시정 명령	업무 정지 1 개월	업무 정지 3 개월	지정 취소	
<u>바.</u> 다른 법률을 위 반한 경우	<u>법 제24조의2 제5항제5호</u>	업무 정지	지정 취소			

<table><tr><td>항에 따른 지정기 준을 갖추지 못하 게 된 경우</td><td>제5항제5호</td><td>취소</td><td></td><td></td><td></td></tr></table>	항에 따른 지정기 준을 갖추지 못하 게 된 경우	제5항제5호	취소				<table><tr><td></td><td></td><td>3개월</td><td></td><td></td><td></td></tr><tr><td>사. 법 제24조의2제1 항에 따른 지정기 준을 갖추지 못하 게 된 경우</td><td>법 제24조의2 제5항제6호</td><td>지정 취소</td><td></td><td></td><td></td></tr></table>			3개월				사. 법 제24조의2제1 항에 따른 지정기 준을 갖추지 못하 게 된 경우	법 제24조의2 제5항제6호	지정 취소			
항에 따른 지정기 준을 갖추지 못하 게 된 경우	제5항제5호	취소																	
		3개월																	
사. 법 제24조의2제1 항에 따른 지정기 준을 갖추지 못하 게 된 경우	법 제24조의2 제5항제6호	지정 취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u>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1조제4항 관련)</u>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 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u>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1조제4항 관련)</u>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 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법 제24조의3제4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자격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법 제24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격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24조의3 제4항제1호	자격 취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검증업무 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 제24조의3 제4항제2호	자격 취소			
< 신 설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24조의3 제4항제1호	자격 취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검증업무 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 제24조의3 제4항제2호	자격 취소			
다. <u>자격정지</u> <u>처분을 위반</u> <u>하여 자격정</u> <u>지 기간 중</u>	법 제24조의3 제4항제3호	<u>자격</u> <u>취소</u>			

[illegible]

<u>호</u>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정지 1개월	정지 3개월	취소	
<u>라.</u>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u>법 제24조의3 제4항제3호</u>	자격 정지 3개월	자격 취소		
<u>마.</u>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적인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u>법 제24조의3 제4항제4호</u>	자격 정지 (교육이수시까지)			
<u>바.</u> 필수적인 교육의 평가 결과가 현저	<u>법 제24조의3 제4항제4호</u>	자격 정지 3개월	자격 취소		

은 경우 3) 별표 6 <u>제6호</u>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자격 정지 1개월	자격 정지 3개월	자격 취소	
<u>마.</u>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u>법 제24조의3 제4항제4호</u>	자격 정지 3개월	자격 취소		
<u>바.</u>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적인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u>법 제24조의3 제4항제5호</u>	자격 정지 (교육이수시까지)			
<u>사.</u> 필수적인	<u>법 제24조의3</u>	자격	자격		

히 낮은 경 우					
<u>사.</u> 장기간(최 종 검증종료 일부터 연속 하여 2년 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 검 증업무를 수 행하지 않은 경우	<u>법 제24조의3</u> <u>제4항제4호</u>	자격 정지 3개월			

교육의 평가 결과가 현저 히 낮은 경 우	<u>제4항제5호</u>	정지 3개월	취소		
<u>아.</u> 장기간(최 종 검증종료 일부터 연속 하여 2년 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 검 증업무를 수 행하지 않은 경우	<u>법 제24조의3</u> <u>제4항제5호</u>	자격 정지 3개월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연 락 처	044-201-6590